

2019. 05. 07.(화)
2019년 제2차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2019

사회복지인
법 새 별 재 단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05월 07일(화) 11:35, (회의소집통지일 : 2019. 04. 25)
2. 장 소 : 동심각(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94-7)
3. 재적임원 : 이사 8명
(한외근, 김원식, 류관열, 문순영, 백창환, 변지호, 이승희, 정경숙)
감사 2명 (김희철, 김홍식)
4. 참석임원 : 이사 5명 (한외근, 백창환, 변지호, 이승희, 정경숙)
5. 심의 의안
- 제1호 의안 : 새별원 보조금 반환에 관한 건
- 기타 보고사항.

1. 성원보고

반용부 사무국장이 재적이사 8명 중 5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한외근 의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11:35)

3. 의장인사

의장은 날씨가 여름 같더니 갑자기 선뜻하게 변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야할 때 인거 같다며 녹음이 우거진 좋은 회의 장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를 하다.

4. 전차회의록 처리

의장이 사무국장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하여 내용이 많으므로 요약하여 설명하기를 요청하고 반용부 사무국장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개회 일시를 시작으로 각 사안별로 요약 설명을 하다. 요약설명이 끝나자 백창환 이사가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동의하고 변지호 이사가 재청,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처리하다.

5. 부의안 심의

<부의안 : 1. 새별원 보조금 반환에 관한 건>

의장은 1호 의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국장은 새별원 총보조금 반환명령 금액 605,299,920원 중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보조금 반환명령 금액 242,159,910원에 대하여 복구청에서 보조금 반환독촉(4차) 공문이 왔으며

공문에는 기한 내(2019.04.30) 반환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반환 지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다. 공문에 적시된 반환기한은 지났지만 이사회를 통해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게 반환 기한을 연장하기로 복구청과 협의하였음을 부연설명하다. 이어서 회의 자료에 첨부된 본 법인 법률자문 김성한 변호사의 자문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최은규前 대표이사의 형사재판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 행정처분인 기 보조금 반환명령 금액 변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기 결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처분 무효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다.

이승희 이사가 법률적으로 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은 의견이라면 재별원 기보조금 반환명령 금액은 재별재단 2019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금융재산의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동의하다.

정경숙 이사가 현재 복구청의 상황이 엄중하니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 되는 것 보다 행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을 듯 보인다고 이사회 이사의 의견을 재청하다. 이어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1호 의안인 재별원 기보조금 반환명령 금액 242,159,910원은 빠른 시일 내 복구청에 반환하기로 결의하다.

<기타 보고사항>

의장은 지난 4월 23일 실시 한 본 법인 산하시설인 새별실버빌의 대구광역시 지도점검에 대하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사무국장은 지도점검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 없었음을 설명하다.





6. 폐회선언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12:10)

위의 결의를 확정키 위해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다.

2019년 05월 07일

사회복지법인 새별재단

대표이사 : 한 위 	이 사 : 백 창 환 
이 사 : 변 지 	이 사 : 이 승 희 
이 사 : 정 경 숙 